

1949년 8월 12일자

### 제네바 협약에 규정된

# 간호원의 권리와 의무

< 3 >



대한적십자사 제공

◇—目—次—◇ 69호에서 계속.

백지 적십자

1. 보호기장

2. 표시기장

3. 보호기장의 남용

신뢰와 책임

국제 적십자

적십자 국제위원회

#### <비국제적 성질의 충돌>

일 제약국의 영토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격을 띠지 아니한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충돌의 각 당사국은 적어도 다음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 <인도적 대우>

(1) 무기를 버린 전투원 및 질병, 부상, 역류 기타의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종, 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문별이나 빈부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

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기의 자에 대한 다음의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를 금지한다.

(a)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b) 인질트 잡는 일

(c)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d) 문맹국인이 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법적 보장을 부여하고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이 행하는 사전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

(2) 부상자 및 병자는 수용하여 간호하여야 한다.

국제적십자 위원회와 같은 공정한 인도적 단체는 그 용역을 충돌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다. 충돌당사국은 특별한 협정에 의하여 본협약의 다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의 규정의 적용은 충돌당사국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I, II, III, IV, 3)

## 백지 적십자

### <표 장>

1863년 10월 “5인위원회”에 의하여 소집된 국제회의는 「유낭」이 부상자 및 의무요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내놓은 제안을 지지했다. 여기서 말한 자들은 공통적이고 또 법체계적으로 존중되는 표장을 착용함으로써 모든 교전자들로부터 배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비전투원”으로 인정될 경우라야만 그러한 보호가 유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백지(白地) 적십자 기장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그당시 국제회의 참석자들이 의식적으로 스위스 국기 색깔을 거꾸로 하려는 의도를 가졌었는지 여부는 오늘날 확일할 수 없다. 스위스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는 귀절은 1906년에 개정된 제네바 협약에서 처음 나타났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는 “백지적십자” 표장이 스위스와 관련있는 것처럼 그릇된 생각을 불러 일으킨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네바제1협약 제53조는 개인이나 상업행위에 있어 스위스 연방 문장(紋章) 또는 이를 모방한 표지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 <군 의무기관용 보호기장>

전지에 있어서 육군부상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864년 8월 22일자 최초의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백지적십자”는 육군 의무기관을 위한 공식적 보호기장으로 정해진 것이었으며, 이로써 처음으로 인도법속에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 <표시기장>

역사적인 이 국제회의 이래 유럽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른 대륙에 이르는 여러 나라에 차례로 설립된 “부상자구호단체”들이 적십자 표장을 표시기장으로 채택하고 국내 적십자사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 <승인된 표장>

그러나 근동 및 중동지역에서는 적십자가 하나의 종교적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회회교(回回敎) 국가들은 “적신월”로써 “적십자”를 대체하였는가 하면, 이란은 “적사자 태양” 표장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표시기장과 보호기장간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들 기장이 자기 어떤 조건하에서 사용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이 되어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용할 자격이 있느냐하는 것도 명시되어 있다.

## 1. 보호기장

### A) 일반적 사항

적십자는 어느 정도 도로교통에 있어 적신호(赤信號)가 갖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적십자는 부상자 및 병자가 있는 곳 또는 상병자 치료를 위한 요원이나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때라도 육상과 해상에서의 적대행위들 “중지”시킨다. 정확히 말해서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보호기장이 제정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제네바 제1협약 및 제2협약에 의하여 군대의무기판만이 권한있는 기관의 감독하에 동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그리고 또 현대전쟁수단을 감안하여, 제네바 제4협약에서는 동기장의 사용권리가 민간인의 보호 및 일정한 조건하에 있어서의 민간병원의 보호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그러나 보호기장의 효력을 희생시키는 동기장의 남용(濫用)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감독 제도가 규정되고 또 각종 법규가 제정되었다. 간호요원들은 남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등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그러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힘써으로써 보호기장사용에 관한 규정이 일치하게 맡은바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 b) 군의무기관

군의무기관은 1949년의 제베바 제1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경우에 있어 보호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보호기장의 사용>

관할 군당국의 지시에 따라 의무기관이 사용하는 기, 완장 및 모든 장비에 백지 적십자 문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I, 39)

### <의무·종교요원의 신분증명>

#### (a) 완장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요원(주·10)은 군당국이 압인 발급한 식별표장이든 방수성의 완장을 좌안에 둘러야 한다.

#### (b) 신분증

이러한 요원은 제16조에 규정하는 신분표지에 부가하여 식별표장이 표시된 특별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는 방수성이며, 또한 주머니에 들어 잠만한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이 증명서는 자국어로 기입되어야 하며, 적어도 소지자의 성명, 생년월일, 계급 및 군번이 표시되고 또한 소지자가 어떤 자격으로 본 협약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또한 소지자의 사진, 서명이나 지문 또는 그 양자가 첨부되어야 하며, 군당국의 인장을 압인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의 요원은 그들의 계급장 또는 신분증명서, 완장을 두를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들은 신분증명서 또는 계급장을 분실하는 경우 신분증명서의 부분을 재교부받거나 계급장을 재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I, 40조1, 2, 4항)

### <의무부대 및 시설의 표지>

본 협약에서 정하는 식별기는 본 협약에 의하여 존중되는 권리를 가지는 의무부대 및 의무시설로서 군당국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하여 게양하여야 한다.

(주·10) 의무요원 규정 참조.

이동부대는 고정시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들 부대 또는 시설이 속하는 충돌당사국의 국기를 전기의 국기와 더불어 게양할 수 있다.

특히 적의 수중에 들어간 의무부대는 이 협약에서 정하는 기 이외의 기를 게양하여서는 아니된다.

충돌당사국은 군사상의 고려가 허용하는 한, 의무부대 또는 의무 시설에 대한 공격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의 지상군, 공군 또는 해군이 식별포장을 명백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 42)

### <중립국 부대의 표지>

제27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일교정국에 용역을 제공하도록 된 중립국의 의무부대(주·11)는 그 교전국이 제42조에 따라서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시에는 언제나 그 교전국의 국기를 이 협약에서 정하는 기와 더불어 게양하여야 한다.

이들 의무 부대는 책임 있는 군당국의 반대의 명령이 없는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비록 적국의 수중에 들어간 경우라 하더라도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I, 43)

제베바 제1협약 및 제2협약의 제39조, 40조 및 42조는 동일하다. 제2협약은 해전에 응용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추가규정들을 갖고 있다.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선박은 다음과 같이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a) 외부의 전표면을 백색으로 한다.

(b) 해상 및 공중으로 부터 최대한 명백히 식별할 수 있고 가급적 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짙은 적십자를 선체의 양측면과 상단에 도장 표시한다.

모든 병원선은 게양된 국기로 식별되며, 중립국 병원선은 그가 지시받을 것을 수락한 충돌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식별된다. 중앙 마스트에는 적십자 표시가 든 백기를 가능한한 높이 게양하여야 한다.

(주·11) 여기서는 중립국의 승인된 적십자사 의무요원을 말한다.

병원선의 구명정, 연안구명정 및 의무기관이 사용하는 모든 소주정은 백색으로 칠하여 짙은 적십자를 명백히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병원선에 관한 전기의 식별방식에 따라야 한다.

전기의 선박과 소주정이 야간이나 악시제하에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보장받으려 할 때에는 그들을 그 권한하에 두는 충돌당사국의 동의에 따라 그 도장과 식별표지를 더욱 선명히 하기 위한 소요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국에 억류된 병원선은 그들이 봉사하는 또는 지휘받을 것을 수락한 충돌당사국의 국기를 하강하여야 한다.

연안구명정은 점령국의 동의를 얻어 점령된 기지로부터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모든 관계 충돌당사국에 대한 사전통고를 조건으로 기지 밖에서는 적십자기와 함께 자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적십자표지에 관한 본조의 규정은 제41조에서 말한 기타 표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충돌당사국은 병원선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상호협정을 체결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Ⅱ. 43)

#### 〈표지 사용상의 제한〉

별도의 국제협약 또는 관계 충돌 당사국 간의 협정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3조에 규정한 식별표지는 전시나 평시를 막론하고 동조에 규정하는 선박의 표식 또는 보호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Ⅱ. 44)

이러한 규정들은 내륙의 경계수역(境界水域)을 항행하는 병원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다(예: 호수, 하천등).

#### C) 민간의무기관

제비마 제4협약의 제18조 및 제20조에 보면,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민간병원이라고 지정된 병원은 보호기장을 사용할 권리를 향유한다. 그러한 시설의 상근(常勤)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과 또한 피점령 지역 또는 군사작전 지역안에 있을 경우에 보호기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시설물에 부착된 보호기장은 항상 규격을 크게 하

고 또한 공중에서도 명백히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민간인 상병자의 수송〉

민간인 상병자를 수송하는 차량은, 노출된 지역에 있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장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그 운전자와 운송자가 책임 있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2개 이상의 엠브렌스들이 차량대열을 이루어 운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일 엠브렌스의 경우는, 그것이 군의무기관에 소속되지 않는한 동기장에 의한 보호를 조장할 수 없는 것이다.

### 2. 표시기장

#### 〈국내적십자사, 적신월사, 적사자태양사〉

이 기장은 평시와 전시에 있어 오직 각국적십자사 및 그들의 동의를 받은 보조기관에 대하여서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에 소속된 시설물에는 작은 규격의 표시기장을 부착할 수 있다. 표시기장은 그러한 건물의 지붕에 부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표장의 부착물에는 반드시 해당 국내적십자사의 사명(社名)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국내적십자사 소유의 차량 및 사업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적용된다. 깃지, 브루지, 핀, 단추 같은 것들에 적십자 표지를 넣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국내적십자사의 명칭 또는 최소한 그 약칭을 기입해야 한다. 관계 국제법 규정에 의하면, 표시기장은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십자 운동이 세계적으로 누리고 있는 명성(名聲)이 법에 의하여 규정된 바와 거의 등등한 정신적 보호를 보장함이 바람직하다.

오직 국내적십자사가 자체의 요원, 건물 및 장비를 군의무기관이 임의로 사용하도록 공여할 경우에만 제비마 제1협약과 제2협약이 적용될 수 있고, 적십자를 보호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 3. 보호기장의 남용

보호기장의 남용은 신뢰와 약속에 대한 중대

한 위반을 구성한다.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는 자는 자기 조국의 명예를 더럽히며, 또한 제네바 협약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도 부터 그 보호를 박탈하는 위험을 초래한다. 보호기장의 엄호하에 있는 적군에 대한 모든 가해행위는 보호기장존중의 파괴인 것이다. 보호기장이 부착된 엠브런스안에 탄약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행위, 의무시설안이나 그 근처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행위, 또는 피결정지역에서의 비밀행동을 음쇄하기 위하여 보호기장을 사용하는 행위들은 그러한 남용의 본보기가 된다.

1949년의 제네바 4개협약을 비준한 각국 정부는 보호기장의 사용을 감독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 신뢰와 책임

신뢰를 시범하는 것은 선물을 시여하는 것과 같다. 그러한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러한 신뢰의 가치를 인정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열망과 결의를 자극시킨다.

1949년의 제네바 4개협약을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한 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들은, 약간의 예외가 있긴하지만, 의무요원들에게 대하여 이러한 신뢰를 가진과 동시에 그들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작국 정부들이 의사와 간호원, 아니 더 나아가서 민간과 군대의 모든 의무 요원들의 윤리적 자질에 신뢰를 갖고 있음을 표현하는 단적(端的)인 현상인 것이다. 의무요원들이야말로 치열한 전투의 와중에서도, 그리고 또 민족주의와 적개심이 팽배하는 상황속에서라도 무엇보다도 때와 곳을 가림 없이 고통에 신음하는 부상자와 병자들을 오직 가르와 구호를 필요로 하는 인간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도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각국 정부는 생각한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무요원들은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신념, 또는 기타 모든 차별에 대한 선입관으로부터 초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의무요원들은 상호간에 응

화적인 협력에의 단계에 도달되기를 우리들은 기대한다.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은 길을따라 걸기를 바란다. 그들이 용기와 자기희생의 행위를 자기눈으로 보면 보다더 원대한 것을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명은, 의무요원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표시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제네바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거 1세기 이상을 노력하여온 적십자 국제위원회(ICRC)에 대하여, 공히 무거운 책임을 부과한다. 우리들 단순한 개인들도 모든 의무요원들에게 대한 우리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의무요원을 지원하고 또 그들을 고무함으로써 우리들 각자가 자기의 의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우리들 가까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들의 행위가 잘못되면 그들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제네바 협약에 규정된 의무사항들은, 그것이 우리가 보호가 부여되도록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의무요원들에게 과하여지는 의무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 비록 가장 어려운 상황속에서라도 견지되어야 하는 직업윤리의 원칙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마치 책을 읽으려면 알파벳트를 알지 않으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때와 모든 곳에서 양식(良識)을 갖고 행동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십자의 원칙과 제네바협약의 일부조항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전쟁으로 인한 혼돈(混沌)과 증오의 와중에서라도 우리의 인도주의적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 적십자

국제적십자는 다음의 세가지 요소들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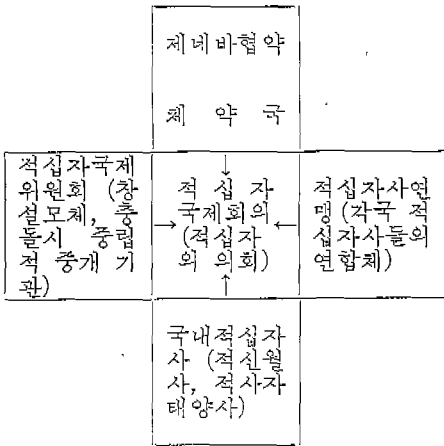
1. 적십자 국제위원회 : 1863년에 창설된 중립

적 기관으로서 적십자원칙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다. (약칭 : ICRC)

2. 적십자사 연맹 : 1919년에 창설되었으며, 각국적십자사들의 세계적 연합체이다.
3. 국내적십자사, 적신월사 및 적사자태양사: ICRC에 의하여 공식적 승인을 받아야하며, 오늘날 총회원수는 2억에 달한다.

적십자국제회의는 국제적십자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4년에 한번씩 개최된다. 이 회의에는 진출한 국제적십자의 3개 요소의 대표들과 제네바 협약 채택국 정부대표들이 참석한다. 이 회의는 일반적 성격의 문제들을 심의하고 결의사항 및 권고사항을 채택한다. 또한 이 회의는 국제회의의 휴회기간중에 소집되는 상치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국제적십자사의 구성 상황은 별지 도표와 같다.



적십자 국제위원회 (ICRC)

〈조 직〉

ICRC는 사적(私的) 성격을 지닌 독립적 기관으로서, 정치, 이데올로기 및 종교에 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이것은 적십자의 창설모체이며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ICRC는 오직 25인 이내의 스위스 국민으로만 구성되며, 그들은 호선에 의해 선출되고 공동적

결정사항을 채택한다. ICRC의 국제적 성격은 그 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임무에 있다.

〈중립적 기관〉

ICRC는, 전쟁, 내란 및 내부적 충돌의 경우에 있어, 희생자들의 상태개선을 위하여 중립적 기관 또는 중개자로서 행동한다.

〈주도성〉

ICRC는, 특수한 중립적이며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자체의 역할과 일치하여 모든 인도주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적십자 원칙의 수호자〉

ICRC는, 적십자의 기본적이고 항구적인 원칙들이 보전되도록 수호한다. 또한 ICRC는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 적사자 태양사포함)에 대한 승인을 결정하는데, 그러한 승인은 각국 적십자사로 하여금 국제적십자의 정식구성원이 되게 하는 요건인 것이다.

〈제네바 협약의 촉진자〉

ICRC는 제네바 협약의 이해와 보급을 위하여 국제인도법의 발전에 주력한다. ICRC는 동협약에 의하여 자체에게 부과된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또한 제네바 협약의 충실한 적용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동협약의 조항에 대한 위반행위에 관련된 소청(訴請)내용을 조사한다.

〈끝〉

간호학계 여러분에게

귀하의 연구노력하신 玉稿를 여러분의 후배를 위하여 또한 간호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본협회 도서실에 비치하여 항상 참고가 되도록 2분씩 남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은 1부라도 꼭 기증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